

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8. 4. 10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8. 4. 18
- 다. 상 정 일 자 : '98. 4. 17 (제61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 안 자 :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
- 나. 제정사유
 -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기 위함.
- 다. 주요내용
 - 기금의 조성 (안 제2조)
 -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
 - 기금의 운용 수익금
 - 기타 수입금등
 - 기금의 관리 (안 제4조)
 -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군 금고에 재난관리기금 계좌 설치
 - 기금의 회계관리 (안 제7조)
 - 수입·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화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허길중)

- 동 조례 제정안은 재난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서,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론요지

“ 생 략 ”

6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첨 부 :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

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
2. 기금의 운용·수익금
3. 기타 수입금등

제3조(기금의 운용계획) 군수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금의 관리)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군 금고에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,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.

② 영 제5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순군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 의한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6조(회계공무원)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관, 분이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.

② 기금운용관은 부군수가 되고, 분이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,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계장이 된다.

제7조(기금의 회계관리) ① 기금의 수입,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화순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.

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 (결산 및 보고)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
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
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화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